

『모아모아 외화적금』 특약

제 1 조 (약관의 적용)

『모아모아 외화적금』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, 거치식 예금약관 및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(예금과목)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 3 조 (가입기간)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합니다.

제 4 조 (납입금)

예금의 최초 납입금은 미화 10불 상당으로 하며, 이후 추가납입금액, 납입횟수 및 납입일자에 관계없이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(이자)

- ① 예금의 이자는 매회 납입한 금액별로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금의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외화 정기예금의 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- ② 만기일 전에 고객이 지급청구 할 때에는 납입금액별로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만기일 이후 고객이 지급청구 할 때에는 납입 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 후 경과일수에 가입할 당시 적용 이율의 3/10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
제 6 조 (이자지급방식)

이 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합니다.

제 7 조 (자동이체)

- ① 원화 또는 외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.
- ② 이체 지급계좌가 원화인 경우에는 해당 납입일 15시 30분 현재 당행에서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며, 해당 납입금액은 ‘외화기준(매월 지정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원화에서 이체)’ 또는 ‘원화기준(매월 지정한 원화금액 이체)’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
- ③ 해당 납입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되며, 15시 30분까지 지급계좌의 잔액이 이체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일 이체는 없습니다.
- ④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을 따릅니다.

제 8 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

2017.8.18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7-약관-0119호